

# 자동차보험 상품 요약서

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
## 가.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

### □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가입대상

| 보험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입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인용,<br>하나개인용(TM),<br>하나개인용,<br>하나개인용(다이렉트) |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(법정승차정원10인이하)<br>단, 인가된 학원 또는 자동차학원대표자소유의 자동차로서 운<br>전교습도로주행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(업무용자<br>동차보험 가입대상임) |
| 하나업무용(TM),<br>하나업무용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나업무용개인소유(TM),<br>하나업무용(다이렉트)               |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, 경승합차<br>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, 경화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나영업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든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나이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데이렌터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여자동차(타인차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데이렌터카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여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데이취급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가용승용차(타인차량)<br>자가용 3종 승합, 경승합차(타인차량)<br>자가용 4종 화물, 경화물차(타인차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나중고차딜러 종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데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가용승용차(타인차량)<br>자가용 3종 승합, 경승합차(타인차량)<br>자가용 4종 화물, 경화물차(타인차량)<br>영업용 장기렌터카(타인차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타임취급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승용차<br>3종 승합, 경승합차<br>4종 화물, 경화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원타임플랫폼 | 자가용승용차(타인차량)<br>자가용 3종 승합, 경승합차(타인차량)<br>자가용 4종 화물, 경화물차(타인차량)<br>영업용 장기렌터카(타인차량) |
| 원타임펍택시 | 자가용승용차<br>자가용 3종 승합, 경승합차<br>영업용 장기렌터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□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

- ① 대상 :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는 기존 가입기간 동안 사고를 여러번 야기하여 보험 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② 취지 : 인수거절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무보험자동차 양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.

### 나. 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

#### □ 의무보험 관련사항

##### ① 정의

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이하 자배법)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.

##### ② 보상한도

| 구 분  |      | 2005. 2. 22 ~ 2016. 3. 31 중의 사고 | 2016. 4. 1 이후의 사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대인 I | 사 망  | 최고 1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 1억5,000만원      |
|      | 부 상  | 최고 2,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 3,000만원        |
|      | 후유장애 | 최고 1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 1억5,000만원      |
| 대 물  |      | 1,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| 2,000만원 이상        |

##### ③ 특징

- **강제보험성** : 자배법에 근거한 강제보험,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. 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보험회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인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
- **계약의 해지 제한(의무보험의 경우는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.**  
단,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)
  - 자동차의 말소등록(이륜차는 사용폐지)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
  -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
  - 천재지변, 화재, 도난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중복계약의 경우 등
- **유한보상제**
  - 대인배상 :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,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.
  - 대물배상 :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.
- **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**  
피보험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**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**  
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 
보유불명사고,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시 대인배상 I 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**음주·무면허 또는 마약·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**
  - **음주운전** : 대인 I (한도 내 지급보험금), 대인 II (1억원), 대물 2천만원 이하(한도 내 지급보험금), 대물 2천만원 초과(5,000만원)
  - **무면허운전** : 대인 I (한도 내 지급보험금), 대인 II (1억원), 대물 2천만원 이하(한도 내 지급보험금), 대물 2천만원 초과(5,000만원)
  - **마약·약물운전** : 대인 I (한도 내 지급보험금), 대인 II (1억원), 대물 2천만원 이하(한도 내 지급보험금), 대물 2천만원 초과(5,000만원)

#### ④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

-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
-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자배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 \*

\* 덤프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, 타이어식 기중기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, 콘크리트 믹서트럭, 타이어식 굴삭기,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1

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 
노면측정장비(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)

## ⑤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

### ○ 미가입시 과태료

| 의무보험<br>미가입기간 | 자가용자동차  |        | 사업용자동차  |        | 이륜자동차  |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| 대인 I    | 대물     | 대인 I    | 대물     | 대인 I   | 대물     |
| 10일 이내        | 10,000원 | 5,000원 | 30,000원 | 5,000원 | 6,000원 | 3,000원 |
| 매 1일 초과       | 4,000원  | 2,000원 | 8,000원  | 2,000원 | 1,200원 | 600원   |
| 최고한도          | 60만원    | 30만원   | 100만원   | 30만원   | 20만원   | 10만원   |

\* 자배법 시행령 【 별표 5 】

### ○ 미가입운행시 벌칙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## □ 담보내용

### ① 대인배상 I

자동차를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.

### ② 대인배상 II

#### -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

| 구 분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| 사망, 부상, 후유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 용         |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, 권리보전과 행사비용, 긴급조치비용,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|
| 기 타         |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보상한도 : 피해자 1인당 5천만원/1억원/2억원/3억원/무한 등
- 특징 : 대인 I의 초과손해 보상

### ③ 대물배상

#### -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, 파손,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.

| 구 분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| - 직접손해: 수리비용, 교환가액<br>- 간접손해: 대차료, 휴차료, 영업손실               |
| 비 용         |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, 권리보전과 행사비용, 긴급조치비용,<br>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|
| 기 타         |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보상한도 : 1사고당 2천만원/3천만원/5천만원/7천만원/1억원/2억원/3억원/5억원/10억원 등(16.4.1일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의무화)

### ④ 자기신체사고

#### -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, 부상,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#### - 보상한도

| 구 분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가입금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피보험자 1인당<br>보험가입금액 | 자기신체<br>사고 | 사망/<br>후유장애 | 1,5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3,0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5,0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1억원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부상          | 1,5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2,0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3,0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5,0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<br>상해  | 사망/<br>후유장애 | 1억원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2억원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3억원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5억원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부상          | 1,0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2,0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3,0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5,0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1억원     |

## ⑤ 자기차량손해

### - 보상범위

피보험자동차의 충돌, 접촉, 추락, 전복, 화재, 폭발, 낙뢰, 차량의 침수 등에 의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(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)

- **보상한도** :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

- **자기부담금** :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% 또는 30%에 해당하는 금액

## 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

### -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(뺑소니차 포함)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.

- **가입조건** : 대인배상 I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

- **특징** :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시 「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」이 자동 적용

□ 주요 면책사항(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)

| 담보종목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주요 면책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인배상 I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-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임<br>의<br>담<br>보 | 공통적용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</li> <li>-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,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(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)</li> <li>- 지진,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</li> <li>- 피보험자자동차를 시험용,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(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대인 II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, 배우자, 자녀에게 생긴 손해</li> <li>-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·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</li> <li>-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</li> <li>-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| 대물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</li> <li>-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</li> <li>- 피보험자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</li> <li>- 남의 서화, 골동품, 조각물,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(단, 훼손된 소지품 또는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)</li> </ul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자기신체사고<br>(자동차상해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.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-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무보험차에<br>의한 상해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.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-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</li> <li>- 피보험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자기차량<br>손해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보험자자동차의 일부 부분품, 부속품,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</li> <li>- 피보험자자동차에 생긴 흠, 마멸, 부식,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</li> <li>- 음주·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주요 특별약관

### ①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(보험종목별 상이)

#### ○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:

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
#### ○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:

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
#### ○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:

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
#### ○ 부부플러스 지명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:

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
#### ○ 가족운전자와 형제·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:

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(형제·자매 포함)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
#### ○ 기명피보험자 1인 플러스지명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:

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
### ②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(보험종목별 상이)

특정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- 운전자 연령 만 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- 운전자 연령 만 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- 운전자 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- 운전자 연령 만 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- 운전자 연령 만 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- 운전자 연령 만 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- 운전자 연령 만 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- 운전자 연령 만 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특정연령 초과인 운전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- 운전자 연령 만 54세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(해당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충족시)

### ③ 보험료 납입관련 특별약관 (보험종목별 상이)

#### ○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:

보험계약자가 납입할 1년간의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.

#### ○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:

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하고, 이 보험계약기간 만료일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약관입니다.

### ④ 기타

#### ○ 대인배상 I 일시담보 특별약관 :

양수인이 양도일 이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인 I의 보상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특별약관입니다.

#### ○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:

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대인, 대물, 자기신체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.

다른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(승용자동차(다인승포함), 경·4종화물자동차 및 경·3종승합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.)인 자동차를 말합니다.

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(다인승 포함), 경/3종승합, 경/4종화물자동차이면서 “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”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적용 됩니다.

#### ○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:

보통약관에서는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, 승합차 및 다인승 승용차의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송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합니다.

## 다. 보험료 분석표

하나손해보험(주) 인터넷 홈페이지 [www.hanainsure.co.kr](http://www.hanainsure.co.kr) 의 「보험가격공시」를  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라. 보험료 산출 기초

### □ 보험료의 구성

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(예정부가보험료)을 반영하여  
산출하며, 예정부가율(예정부가보험료)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(예정사업비)로  
구성됩니다.

| 구분   |      |      | 손해율   | 사업비율  | 이익율 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오프라인 | 비사업용 | 책임보험 | 76.0% | 24.0% | 0.0% |
|      |      | 임의보험 | 74.0% | 24.0% | 2.0% |
|      | 사업용  | 책임보험 | 76.0% | 24.0% | 0.0% |
|      |      | 임의보험 | 74.0% | 24.0% | 2.0% |
| TM   | 비사업용 | 책임보험 | 85.5% | 14.5% | 0.0% |
|      |      | 임의보험 | 83.5% | 14.5% | 2.0% |
|      | 사업용  | 책임보험 | 85.5% | 14.5% | 0.0% |
|      |      | 임의보험 | 83.5% | 14.5% | 2.0% |
| CM   | 비사업용 | 책임보험 | 89.3% | 10.7% | 0.0% |
|      |      | 임의보험 | 87.3% | 10.7% | 2.0% |
|      | 사업용  | 책임보험 | 89.3% | 10.7% | 0.0% |
|      |      | 임의보험 | 87.3% | 10.7% | 2.0% |

## 【 Q&A 】

**Q : 의무보험 미가입시의 불이익은?**

A :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, 미가입한 채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**Q :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는?**

A : 음주운전 중 사고발생 시에도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

**Q : 일반적인 상품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상품은?**

A : 에듀카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고객이 원하는 플랜으로 선택하시면 일반적인 상품보다 확대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*Q : 혼자만 운전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?**

A : ‘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’을 가입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**Q : 만21세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기간 도중 연령이 만26세가 되었는데 특약변경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**

A :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 계약에서 연령한정특약을 변경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.

**Q :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특약을 들었는데 동생이 운전 중 사고시의 보상여부?**

A :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‘가족운전자와 형제/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’에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.

**Q : 무사고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?**

A :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
**Q : 밤새 주차중인 차량을 누군가 파손한 경우의 보상여부는?**

A :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보상금액에 따라 할증 및 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.

**Q :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**

A : 하사관 이하의 계급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, 병무청 확인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*Q :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친구의 차량(가족한정특약가입을)을 운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**

A : 무보험상해 담보에 가입하고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시면, 상기와 같은 경우 책임보험은 친구의 차량으로 책임보험 이외(대인Ⅱ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)는 본인명의로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.

**Q : 가족한정특약과 26세 이상 한정특약을 가입했는데 이 경우 친구가 운전 중 사고시 대물배상이 가능한지 여부?**

A : 친구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배상은 불가능합니다.

[상품개발부서 : 자동차보험팀 02-6670-8055](tel:02-6670-8055)